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85
----------	------

2026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6년 3월 30일  
다.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라. 상정일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8.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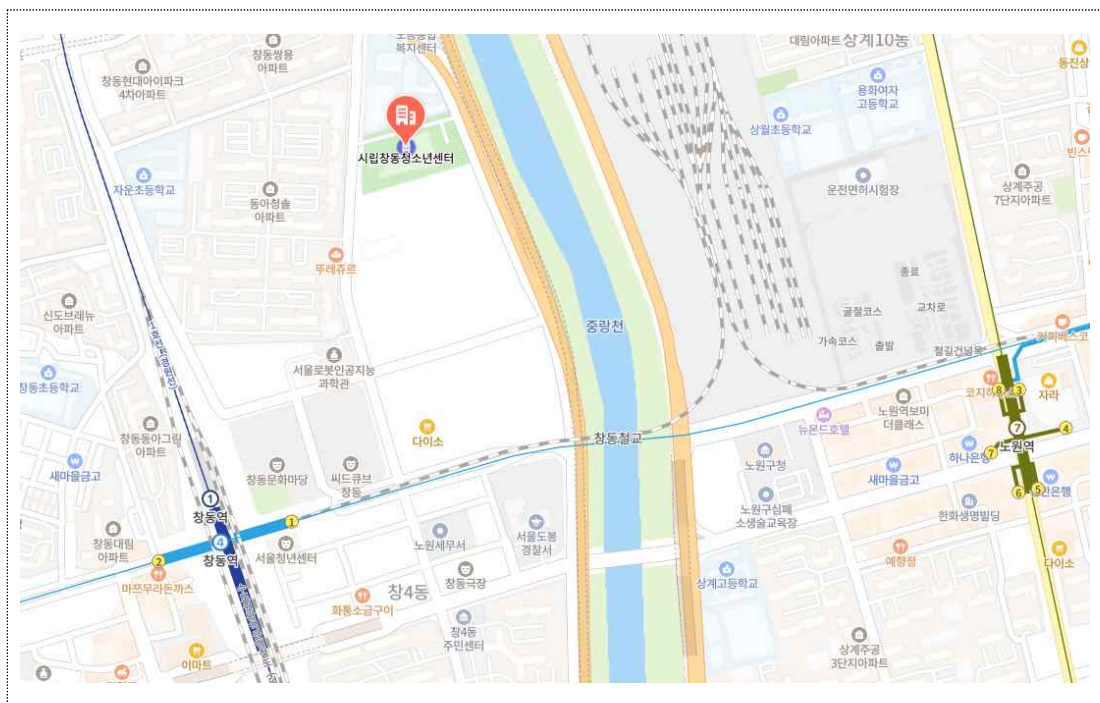
-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10.29.
- 시설규모 : 대지 61,563 $m^2$  / 연면적 5,016 $m^2$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디지털창작공간, 공연연습실, 다목적활동장, 루프탑, 피아노실 등 평생교육 강의실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9.1. ~ 2029.8.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91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95백만원, 운영비 201백만원, 사업비 9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4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창동 청소년센터(이하 ‘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9.1.~2029.8.31.)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시설규모 : 대지 61,563㎡ / 연면적 5,016㎡
- 개관일자 : 2005. 10. 29.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디지털창작공간, 공연연습실, 다목적활동장, 루프탑, 피아노실 등 평생교육 강의실
- 위탁기간 : 3년(2026. 9. 1. ~ 2029. 8. 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291백만원(20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95백만원, 운영비 201백만원, 사업비 9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4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2023년 창동청소년센터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위탁기간 3년, '23.7.1.~'26.6.30.)하였고, 현 수탁법인((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의 청소년 시설 운영평가 결과(평균 89.37점 : '23년 실적 89.44점, '24년 실적 89.30점)가 '재계약 배제기준'[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5.5.28.)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점수 85점 미만시 재계약 배제]인 평균 85점을 상회(평균 89.37점)하여, 당초 재계약(2년 연장) 대상시설에 해당하였으나,
  - 수탁법인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재계약 포기

- '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3.5.3.
  - (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와 위수탁 협약 체결(3년) 및 위탁 개시 : '23.7.1.~'26.6.30.
  - (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 재계약 포기 의사 표명(공문 제출) : '26.2.6.
    - 법인 내부 사정 및 운영 여건 변화로 전문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포기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시설 재위탁 추진 결정 : '26.2월
    - 市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6.3.5.) 결과 : 적정 (위탁기간 : '26.9.1.~'29.8.31.)
    - 차기 수탁법인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26.8.31.까지 현 수탁법인에서 센터 운영(60일 연장, '26.7.1.~26.8.31.)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됨.
  -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 시설 관리 등으로 조례(「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호)에 규정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적정성·타당성 및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청소년시설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다양한 문제(특정단체의 독점·장기위탁, 종속화, 낮은 효율성, 개선 없는 프로그램, 사업성과 하락, 민간의 경쟁부족, 낮은 수준의 관리·감독권, 고용승계 논란, 인력운영의 적정성, 수익사업 우선 추진 등)가 지적된바,
- 민간위탁 동의안(「민간위탁조례」 제4조의4 관련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및 기간,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간의 성과(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등)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창동청소년센터는 2005년 개관하여, 최초 위탁(최초 3년간 광운대학교, 도봉아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컨소시엄 운영)부터 21년간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이하 '광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의 시설로, 현원 27명(정규직 16명, 계약직 11명, 2026.3.1. 기준)의 직원이 22억 9천 1백만원 (2026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창동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05.07.27.~'08.07.26.)	컨소시엄(광운대학교, 도봉아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08.07.27.~'11.08.31.)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3차 위탁	2년 ('11.09.01.~'13.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4차 위탁	3년 ('13.07.01.~'16.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5차 위탁	2년 ('16.07.01.~'18.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6차 위탁	3년 ('18.07.01.~'21.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7차 위탁	2년 ('21.07.01.~'23.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8차 위탁	3년 ('23.07.01.~'26.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 〈 창동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6.3.1. 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순수	사업	프로젝트
정원	27	27	1	1	1	3	4	7	6	3	2	-	-	-	-
현원	27	16	-	1	1	1	4	5	4	-	-	11	3	4	4

### 〈 창동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4개 분야, 18개 사업, 96개 프로그램	
1	교육사업	평생교육(문화예술 주말자기계발 마스터클래스 등)	1개 사업, 5개 프로그램
2	목적사업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중등방과후아카데미, 학교연계, 청소년주도참여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8개 사업, 56개 프로그램
3	민간위탁금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찾아가는청소년센터, 유스데이운영지원 등	8개 사업, 34개 프로그램
4	보조금	기타사업보조금(지정평생학습관)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 〈 창동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2,322,000	100%	2,291,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599,858	68.9%	1,666,447	41%
		민간위탁사업비	108,189	4.7%	-	8.2%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34,500	1.5%	3,000	0.1%
		구비보조금	-	-	-	9.2%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353,332	15.2%	395,432	39.1%
	사업외 수입	예수금수입	224,529	9.7%	224,529	-
		이월금	620	0.0%	620	0.7%
		기타잡수입	972	0.0%	972	1.8%
세출 예산	계	2,322,000	100%		100%	
	인건비	876,922	37.8%	894,555	31.1%	
	운영비	196,009	8.4%	201,422	13.9%	
	사업비	999,320	43.0%	945,584	52.7%	
	사업외지출	224,529	9.7%	224,529	0.9%	
	예비비	23,220	1.0%	22,910	1%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600	0.0%	600	0.4%	
	일반관리비	1,400	0.1%	1,400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창동청소년센터를 걱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창동청소년센터 운영평가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한국정보경영평가]
- 평가기간 : 2024년도(실시기간 2025.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9.3점(100점 만점)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4.1월~12월 성과) 결과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서울시 중장기 정책 확대 반영, 자체점검 모니터링 확대,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확대 권장, 외부교육 및 직무교육의 확대, 자체 워크숍 및 세미나의 확대 권장, 상담실 활용도 제고, 안전 관련 외부점검 및 교육훈련 확대 필요, 특성화 사업 (로봇·과학) 대외 확산 강화 및 전파 필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는바,
- 창동청소년센터는 서울시 정책과의 사업 연관성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제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확대, 공간 활용 제고 및 안전 강화, 특성화 사업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향후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서울시 중장기 정책을 확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점검 모니터링 확대가 요구됨
-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확대 권장, 외부교육 및 직무교육의 확대, 자체 워크숍 및 세미나의 확대 권장
- 1분기 예산계획에 대한 적정성 개선이 필요하며,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요구됨
- 상담실 활용도 제고, 안전 관련 외부점검 및 교육훈련 확대 필요
- 센터의 강점인 로봇·과학 기반 특성화 사업에 대한 대외 확산 강화를 통해 타 시설로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창동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에서 회계 처리, 복무 및 출장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바, 수탁 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창동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시설사용분담금 재원 미구분 집행 (동일 건물 내 센터*의 시설분담금 미분리 집행) *창동청소년센터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치완료
	예수금 통장관리 미흡(회계 연도말 잔액 존재)	조치완료
2024년	복무관리 미흡(유연근무 및 연차 사용 후 결재 등)	조치완료
2025년	출장복명서 작성 미흡(출장복명서 누락 건 존재)	조치완료

- 한편, 창동청소년센터는 2026년 기준 교육사업(평생교육), 목적사업(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연계, 청소년 주도 참여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민간 위탁금(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유스데이 운영지원 등) 등 4개 분야, 18개 사업, 9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2025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창동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 '25.12.31. 기준)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4	166,502	212,098	127%	196,714	92.8%
2025	179,017	226,057	126%	208,943	92.4%

※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p>다. 이용자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p> <p>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p> <p>○ 청소년수련시설의 <u>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u>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p>
---

- 마지막으로, 창동청소년센터와 같이 최근 수탁기관의 운영 포기(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계약 기준 미달(시립목동청소년센터) 등으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단체에 시립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의회 심의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은 물론 책임성을 갖춘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선발 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협약해지 사유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5.4.25.
- 신규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25.8.13.) 및 1순위 선정 : (재)푸른나무재단
- (재)푸른나무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25.9.29.) 및 위탁 개시 : '25.9.29.~'28.6.30.
- (재)푸른나무재단 협약 해지 의사 표명 : '25.10.14.
  - 고용승계(위탁개시일 3일전 고용승계 불가 통보) 관련 비방적 언론보도 등에 따른 재단 명예 훼손 우려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재계약배제 사유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3.5.3.
- (사)한국청소년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3년) 및 위탁 개시 : '23.7.1.~'26.6.30.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평균 83.72점 : '23년 실적 82.88점, '24년 실적 84.56점), '재계약 배제(평균 85점 미만) 대상에 해당 → 재위탁 공모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85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8.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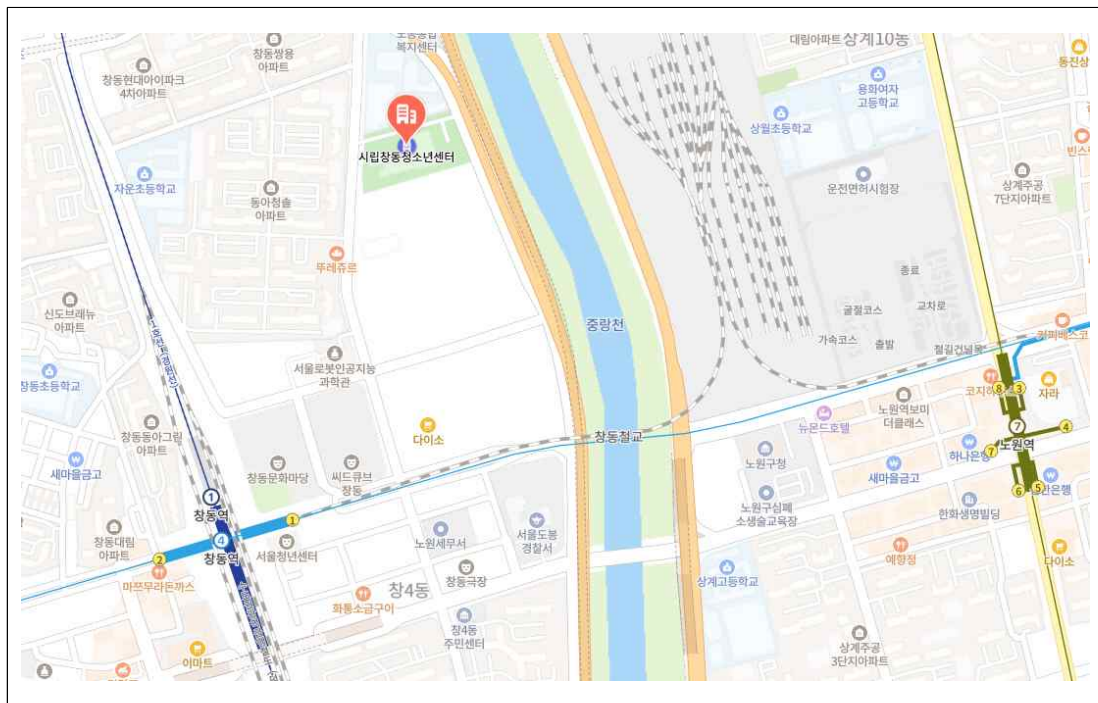
-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 10. 29.
- 시설규모 : 대지 61,563m<sup>2</sup> / 연면적 5,016m<sup>2</sup>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디지털창작공간, 공연연습실, 다목적 활동장, 루프탑, 피아노실 등 평생교육 강의실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 9. 1. ~ 2029. 8.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91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95백만원, 운영비 201백만원, 사업비 9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49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성과보고서 1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 (☎02-2133-4124)